# 2023년 귀속 소득ㆍ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내역 [건강보험료]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신자	670316-2811111		

## ■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내역

(단위:원)

ОГНІ	보수월액(	고지금액)	소득월액(납부금액)		
월별	건강보험료①	장기요양보험료②	건강보험료③	장기요양보험료④	
01월	79,890	10,160	0	0	
02월	74,940	9,590	0	0	
03월	74,940	9,590	0	0	
04월	76,650	9,810	0	0	
05월	76,650	9,810	0	0	
06월	76,650	9,810	0	0	
07월	76,650	9,810	0	0	
08월	76,650	9,810	0	0	
09월	76,650	9,810	0	0	
10월	76,650	9,810	0	0	
11월	76,650	9,810	0	0	
12월	76,650	9,810	0	0	
연말정산	22,890	2,850			
합계	942,510	120,480	0	0	
총합계				1,062,990	

1. 보수월액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 (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에는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

2. 소득월액 보험료 :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귀속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기본내역 [고용보험료]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김신자	670316-2811111

## ■ 고용보험료 고지내역

(단위:원)

월별	고지금액
01월	19,020
02월	19,020
03월	19,020
04월	51,940
05월	21,530
06월	21,530
07월	21,530
08월	21,530
09월	21,530
10월	21,530
11월	21,530
12월	21,530
합계	281,240

- 1. 고지금액: 근로복지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실제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급액입니다. (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
- 2. 시점에 따라 월별 고지금액이 마이너스(-)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 3. 건설업, 벌목업 사업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국민연금보험료]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신자	670316-2811111		

■ 국민연금보험료 내역 (단위:원)

월별	직장가입자 고지금액	지역가입자 등 납부금액
01월	93,820	0
02월	93,820	0
03월	93,820	0
04월	93,820	0
05월	93,820	0
06월	93,820	0
07월	95,940	0
08월	95,940	0
09월	95,940	0
10월	95,940	0
11월	95,940	0
12월	95,940	0
직장가입자 소급고지금액	0	
추납보접	험료 납부금액	0
실업크레딧 납부금액		0
합계	1,138,560	0
	총합계	1,138,560

- 1. 직장가입자 고지금액: 국민연금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 (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
- ※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근로자는 해당 지원금이 공제된 금액으로 월별 고지금액이 제공되며, 지원금 공제 시점에 따라 월별 고지금액이 마이너스(-)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 2.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은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지출처별)내역 [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신자	670316-2811111		

##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상 호		보험종-	류			
종류	사업자번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자	납입금액 계
	종피보험자1(수익자)		종피보험자2(수익자)		종피보험자3(	수익자)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다이렉트(TM)개인용				
보장성	201-81-45593		2202333336	04000	670316-*****	김신자	1,001,930
	디비손해보험 :	주식회사	다이렉트(TM)	)개인용			
보장성	201-81-45	5593	2202356195	47000	670316-*****	김신자	734,850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다이렉트(TM)	다이렉트(TM)개인용			
보장성	201-81-45593		2202347745	64000	670316-*****	김신자	926,360
	디지비생명보험(주)		매직콜건	!강			
보장성	604-81-13363		204075720274		670316-*****	김신자	469,200
	한화생명보험	험 (주)	명품암보험표(무)				
보장성	116-81-11	.757	176749533		670316-*****	김신자	906,610

1. 공제 대상: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2. 공제 한도 : 100만원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지출처별)내역 [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신자	670316-2811111

##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상 호		보험종류				
종류	사업자번	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납입금액 계
	종피보험자1(수익자)		종피보험자2(수익자)		종피보험자3(	수익자)	
	삼성화재해상보험 ( 주 )		무배당 삼성화재 7	가정종합보험			
보장성	202-81-45	617	5132090622	20000	610303-****	신용훈	360,000
	한화손해보험(주)		무배당카네이션	I Love보			
보장성	116-81-46	5445	LA200950470	037000	670316-****	김신자	824,040
	한화생명보험 (주)		스페셜암보험(2	행신형)(무)			
보장성	116-81-11757		1829626	41	670316-****	김신자	810,240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참좋은운전자상해보험(TM)2210				
보장성	201-81-45	5593	320222230278		670316-****	김신자	329,280
	인별합계금액		6,362,5		6,362,510		

1. 공제 대상: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2. 공제 한도 : 100만원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지출처별)내역 [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신은주	980527-2728012

##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상 호		보험종	류			
종류	사업자번	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납입금액 계
	종피보험자1(	수익자)	종피보험자2(수익자)		종피보험자3(	수익자)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무) NH가성비굿플	러스어린이보			
보장성	104-86-39	719	319077445	1341	980527-*****	신은주	582,816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무) 헤아림실손의료비보험2004				
보장성	104-86-39	719	319077445	2251	980527-*****	신은주	116,619
	흥국생명보험	(주)	(무)흥국생명다()시	(무)흥국생명다()사랑통합보험			
보장성	104-81-18586		2343426200001		980527-*****	신은주	326,496
	인별합계금액						1,025,931

1. 공제 대상 :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2. 공제 한도 : 100만원

일련번호: 20240119-44152350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6-

# 2023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의료비]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신자	670316-2811111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513-90-36136	한빛이비인후과	일반	14,700
501-82-06139	재 ) 한국의학연구소대구분사무 소	일반	66,600
612-03-17042	온누리성모약국	일반	58,956
513-15-64616	메디팜 현도약국	일반	3,500
513-90-64535	조은연합정형외과	일반	24,100
513-96-10458	이경수내과의원	일반	8,800
108-35-22052	다정약국	일반	92,880
178-95-00411	신세계 한의원	일반	18,800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288,336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0
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			0
인별합계금액			288,336

- 1.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 미용 목적 성형(교정)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보약)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 2. 공제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건강보험 산정특례자·난임시술비(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
  -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의료비]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신은주	980527-2728012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219-82-00046	서울아산병원	일반	216,800
609-90-76706	서울김내과의원	일반	5,100
108-90-71789	연세이비인후과의원	일반	5,100
108-14-75078	베토벤안경 ( 상도점 )	안경 또는 콘텍트렌즈 구 입비용	73,500
108-15-38478	중앙프라자약국	일반	2,400
325-52-00121	렌즈베리 구미인동점	안경 또는 콘텍트렌즈 구 입비용	72,000
106-92-01184	상도열린치과	일반	8,800
212-68-00068	새싹약국	일반	4,000
483-58-00278	더설레임 피부과의원	일반	35,000
720-95-01356	상도바른정형외과	일반	27,400
682-62-00440	여의도 수약국	일반	2,600
148-19-01337	송약국	일반	3,200
216-92-01410	여의도 아라외과의원	일반	3,896,350
508-11-45716	에이스여성의원(ACE Women's Clinic)	일반	298,900

- 1.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 미용 목적 성형(교정)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보약)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 2. 공제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건강보험 산정특례자·난임시술비(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
  -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의료비]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신은주	980527-2728012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4,505,650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145,500
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			0
인별합계금액			4,651,150

- 1.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 미용 목적 성형(교정)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보약)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9-

- 2. 공제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건강보험 산정특례자·난임시술비(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
  -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내역 [실손의료보험금]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 피보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신은주	980527-2728012

##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

(단위:원)

상호	상품명	보험기	ᅨ약자	<b>스</b> 려그애 게
사업자번호	계약(증권)번호	수익자		수령금액 계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무) 헤아림실손의료비보 험2004	980527-2728012	신은주	3,224,133
104-86-39719	3190774452251	980527-*****	신은주	3,224,133
인별합계금액				3,224,133

1.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공제받아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사용처별)내역 [신용카드]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신자	670316-2811111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단위:원)

구분	일반	전통시장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비이용분	합계금액
2023년 합계	4,088,430	135,780	26,450	0	4,250,660
1월~3월	991,040	0	2,500	0	993,540
4월~12월	3,097,390	135,780	23,950	0	3,257,120

####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신용카드	104-86-39742	농협은행 주식회사	일반	4,059,910
신용카드	104-86-39742	농협은행 주식회사	전통시장	135,780
신용카드	104-86-39742	농협은행 주식회사	대중교통	26,450
신용카드	214-81-37726	비씨카드 (주)	일반	28,520
인별합	계금액			4,250,660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한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박급
-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사용처별)내역 [신용카드]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신은주	980527-2728012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단위:원)

구분	일반	전통시장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비이용분	합계금액
2023년 합계	3,800	0	637,710	0	641,510
1월~3월	3,800	0	203,210	0	207,010
4월~12월	0	0	434,500	0	434,500

##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신용카드	104-86-39742	농협은행 주식회사	일반	3,800
신용카드	104-86-39742	농협은행 주식회사	대중교통	637,710
신용카드	214-81-37726	비씨카드 (주)	대중교통	0
인별합계금액				641,510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사용처별)내역 [직불카드 등]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신자	670316-2811111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단위:원)

구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2023년 합계	3,424,200	0	0	0	3,424,200
1월~3월	276,780	0	0	0	276,780
4월~12월	3,147,420	0	0	0	3,147,420

##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직불카드 등	104-86-39742	농협은행 주식회사	일반	3,424,200
인별합계금액				3,424,200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 2. 사용처 구분: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가수하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들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박규
-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사용처별)내역 [직불카드 등]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신은주	980527-2728012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단위:원)

구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2023년 합계	12,963,947	8,000	228,500	24,270	13,224,717
1월~3월	3,234,405	0	14,900	0	3,249,305
4월~12월	9,729,542	8,000	213,600	24,270	9,975,412

####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직불카드 등	104-82-0707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일반	63,600
직불카드 등	104-86-39742	농협은행 주식회사	일반	11,997,516
직불카드 등	104-86-39742	농협은행 주식회사	전통시장	8,000
직불카드 등	104-86-39742	농협은행 주식회사	대중교통	159,900
직불카드 등	104-86-39742	농협은행 주식회사	도서공연등	24,270
직불카드 등	214-81-37726	비씨카드 (주)	일반	0
직불카드 등	214-81-37726	비씨카드 (주)	대중교통	0
직불카드 등	527-88-00686	주식회사 카카오페이	일반	28,900
직불카드 등	462-86-01671	토스뱅크 주식회사	일반	873,931
직불카드 등	462-86-01671	토스뱅크 주식회사	대중교통	68,600
인별합계금액				13,224,717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신자	670316-2811111

####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

(단위:원)

구분	일반	전통시장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비이용분	주택임차료 거래	합계금액
2023년 합계	240,780	0	0	0	0	240,780
1월~3월	35,870	0	0	0	0	35,870
4월~12월	204,910	0	0	0	0	204,910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15-

-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현금영수증신용카드미발급/발급거부 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 2. 국세청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는 주택임차료(월세) 거래분은 일반거래금액으로 계산함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신자	670316-2811111

####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종류		월별 공제대상금액				
	01월	02월	03월	04월	고레디사그에	
	05월	06월	07월	08월	공제대상금액	
	09월	10월	11월	12월		
		12,240	23,630	0	0	
현금영수증 일반거래	7,750	0	0	0	240,780	
		5,180	0	69,150	122,830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16-

-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현금영수증신용카드미발급/발급거부 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 2. 국세청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는 주택임차료(월세) 거래분은 일반거래금액으로 계산함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신은주	980527-2728012	

####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

(단위:원)

구분	일반	전통시장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비이용분	주택임차료 거래	합계금액
2023년 합계	1,759,978	0	266,400	0	0	2,026,378
1월~3월	440,492	0	25,800	0	0	466,292
4월~12월	1,319,486	0	240,600	0	0	1,560,086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17-

-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현금영수증신용카드미발급/발급거부 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 2. 국세청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는 주택임차료(월세) 거래분은 일반거래금액으로 계산함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신은주	980527-2728012	

####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b>.</b>	01월	02월	03월	04월	고레디사그애
	종류	05월	06월	07월	08월	공제대상금액
		09월	10월	11월	12월	
현금영수증 일반거래		156,365	180,927	103,200	154,467	
	일반거래	204,600	119,200	223,886	151,200	1,759,978
		156,533	103,200	103,200	103,200	
현금영수증 대중교통거래	25,800	0	0	0		
	대중교통거래	0	0	52,800	130,000	266,400
		46,400	-11,800	23,200	0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18-

-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현금영수증신용카드미발급/발급거부 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 2. 국세청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는 주택임차료(월세) 거래분은 일반거래금액으로 계산함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기부금]

(조회기간 : 2023년 01~12월)

## ■ 기부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신자	670316-2811111	

■ 기부금 지출내역 (단위:원)

사업자번호	단체명	기부유형	기부금액 합계	공제대상 기부금액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116-82-14426	사회복지법인 사회 복지공동모금회	특례(법정)기부금	100,000	100,000	0
인별합계금액					100,000

- ※ 기부금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기부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므로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1년 전체 기부금액이 조회됩니다.
- 1. 공제 대상 :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
-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9-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기부금]

(조회기간 : 2023년 01~12월)

## ■ 기부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신은주	980527-2728012	

■ 기부금 지출내역 (단위:원)

사업자번호	단체명	기부유형	기부금액 합계	공제대상 기부금액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102-82-07606	사단법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해피빈 재단)	특례(법정)기부금	10,000	10,000	0
인별합계금액					10,000

- ※ 기부금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기부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므로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1년 전체 기부금액이 조회됩니다.
- 1. 공제 대상 :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
-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